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가단6022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2016. 12. 15.

판결 선고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별지 2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016. 8. 1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그 위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을

보유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의 소유권취득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손해배상으로 월 4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갑1 내지 6에 의하면, C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2015. 10. 21. C로부터 매수하여 2015.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5. 7. 22.자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매절차(이 법원 D)에서 E이 2016. 8. 11.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당일 원고가 E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까지 매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C는 이 사건 건물은 자신이 모친과 함께 살아온 집이라 하였고 실제로 당시에 C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수한 인근 토지[등기부상 '매매목록' 부분]에는 C의 창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도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현재 C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건축된지 5-60년이 경과된 건물이라는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거나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상헌

별지